

# 우리나라 稅制의 衡平性 測定\*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 家口의 稅負擔의 差異를 中心으로—

玄 鎮 權\*\* · 羅 城 麟\*\*\*

< 目 次 >

- I. 序 論
- II. 衡平性 測定係數
- III. 資 料
- IV. 分析結果
- V. 結 論

## I. 序 論

租稅改革을 담당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조세개혁안이所得階層간의 稅負擔의 衡平性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稅制의 衡平性은 오랫동안 財政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실증적 연구가 있다. 稅制의 衡平性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데, 垂直的 衡平性(vertical equity)과 水平的 衡平性(horizontal equity)이 그것이다. 垂直的 및 水平的 衡平性的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즉 垂直的 衡平性이란 각 계층이 가진 능력에 따라 租稅負擔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测定하는 것이고,

\*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지성림, 이정열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표합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 한림대학교

水平的 衡平性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조세부담을 하는 정도를 测定하는 것이다. 衡平性을 测定하는 대표적인 係數로는 지니係數와 Atkinson 指數를 들 수 있으며, 이들 係數는 실증적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1)</sup> 이외에도 Berliant와 Strauss 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指數로서 미국 稅制의 분석에 몇 차례 적용되었다. 이러한 衡平性 测定係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보면 郭泰元(1987), 李啓植과 裴埈皓(1986)의 연구는 間接稅의 稅負擔을 분석하였고, 羅城麟(1991), 羅城麟과 玄鎮權(1993)은 直接稅 및 間接稅의 稅負擔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가 垂直的 衡平性에 대한 연구이고,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없다.

稅負擔의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예로 勤勞者와 自營業者간의 稅負擔의 行態에서 잘 나타난다. 근로자의 課稅所得은 비교적 정확히 세무당국에 의해 포착되지만, 自營業者의 실질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같은 소득수준을 가진 두 계층이 서로 다른 稅負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근로자 계층과 自營業者 계층의 稅負擔의 정확한 차이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만, 自營業者의 實際所得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가 가지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的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이며, 衡平性을 测定하기 위해 지니係數, Atkinson 指數, Berliant와 Strauss 指數(이하 B-S 指數로 표시함) 모두를 사용하여 이들 係數들간의 일치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 도시가구를 근로자 가구, 自營業者가구인 근로자외 가구로 나누어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의 稅負擔 衡平性을 분석하였다.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은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의 지출액을 사용하여 實際所得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自營業者 가구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 衡平性을 비교

1) 지니계수와 사회후생계수에 의한 형평계수의 종합적 고찰은 Borooah(1991)와 Lambert(1989)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衡平性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係數를 차례로 보여 준다. 둘째,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87년 도시 가계자료의 분석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근로자와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셋째, 세 가지 衡平係數의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의 衡平性을 평가하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을 보여 준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을 보여 주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 시사성과 연구의 제약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 II. 衡平性 測定係數

衡平性을 测定하는 係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係數로서 로렌쓰 곡선(Lorenz curve)를 이용한 지니係數와 社會厚生函數(social welfare function)를 응용한 衡平性 係數로 Atkinson 指數가 있다. 이러한 두 係數는 일반적으로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니係數와 Atkinson 指數는 垂直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係數이며,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여러 가지 係數들이 개발되어 있다. Berlant-Strauss 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指數이다. 衡平性을 测定하는 이러한 係數들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가지만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각 係數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係數들을 모두 사용하여 衡平性을 测定하고 상호 비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衡平性 係數들 간의 일치성(consistency)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의 衡平性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 係數를 중심으로 衡平性에 대한 문헌과 각 지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 1. 衡平性 係數의 문헌고찰

租稅制度의 衡平性을 测定하는 많은 係數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들간에 衡

平性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衡平性 測定係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係數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垂直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係數는 로렌쓰 곡선을 이용한 지니係數이다. 이 係數는 최적의 소득분포를 가정하고 실제의 소득분포가 최적의 분포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느냐를 보여준다. 지니係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주로 최적의 소득분포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Paglin(1975)은 최적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선은 각 세대의 生涯週期(life cycle)에 따른 지출에 대한 수요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가구는 시간에 관계없이 동등한 소득을 가지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가정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로렌쓰 곡선을 사용한 모형은 가구들 간의 衡平性과 시간적인 衡平性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Atkinson(1971)은 이상적인 垂直的 衡平性은 같은 생애주기(life cycle)에 있는 가구들 간의 衡平性만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Paglin(1975)은 衡平性에 있어서 시간적 衡平性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垂直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다른 접근법으로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测定法을 들 수 있다. Atkinson(1970)은 소득분포를 반영하는 垂直的 衡平指數는 잘 정의된 社會厚生函數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개발한 社會厚生函數를 바탕으로 衡平性을 测定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널리 사용되었으며 각기 다른 社會厚生函數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다(King(1983), Rosen(1978)).

Berlant와 Strauss(1983, 1985)가 개발한 衡平性 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함께 测定하는 指數이다.<sup>2)</sup> 그들의 指數는 租稅制度의 垂直的 衡平性을 测定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누진제도(progressive system),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담하는 비례제도(proportional system), 소득이 높은 계층이 오히려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역진제도(regressive system)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개념을 사용하여 垂直的 衡平性을 논의한 연구로는 Kiefer(1984), Suits(1977), Wertz(1978)를 들 수 있다. 垂直的 衡平性

2) B-S 지수를 사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한 예로서 玄鎮權(1991)이 있다.

을 测定하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租稅制度 자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지니係數나 Atkinson 指數가 조세 전과 조세 후의 소득만을 사용하여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효과를 测定하므로, 租稅制度 자체의 성격에 대하여 直接 测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租稅制度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B-S 指數와 같은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租稅制度의 특성을 测定하는 데 나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租稅制度의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분석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稅負擔을 하는 정도를 测定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같은 능력’이란 Feldstein(1975)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효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증 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效用函數를 모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소득을 구하여 같은 능력의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垂直的 衡平性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면, 水平的 衡平性은 최근에 와서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Atkinson(1983), Feldstein(1976), Plotnick(1985)). Nozick(1974)은 올바른 분포는 현존하는 분포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포를 이루게 한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水平的 衡平性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水平的 衡平性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명확하지가 않다. Musgrave(1959)에 따르면 水平的 衡平性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취급되어져야 한다(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고 정의한다. 그러나 King(1983)은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전적 정의인 ‘같은 처지의 같은 취급’은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며, 소득을 순위별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의 순위를 비교하여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lotnick(1982)은 Fields와 Fei(1978)의 접근법을 따라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係數가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을 제시하고, 순위보전(rank preservation)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水平的 衡平性을 测定하는 많은 係數들은 이러한 순위보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왔다(Feldstein(1976), Plotnick(1981, 1982, 1985)). Berlant와 Strauss(1985)는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원리가 서로 상충함을 보이고,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 원리는 서로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시한 水平的 衡平性 测定指數는 고전적 정의에 부응하는 指數이다.

衡平性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租稅制度란 같은 所得階層이 같은 稅負擔을 가지는 水平的 衡平性의 침해없이, 조세부과 후 垂直的 衡平性이 향상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명확한 이론은 없으나, Musgrave(1990)는 이들 두 衡平性이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King(1983)은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으로 나뉠 수 있는 衡平係數를 社會厚生函數에서 개발하여 이들 두 衡平性들간의 상충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衡平性을 통한 조세개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두 衡平性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지니係數

지니係數는 소득분포를 测定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연구로는 로렌쓰 곡선(Lorenz curve)를 사용한다. 로렌쓰 곡선의 구성을 살펴보면 종축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cumulative distribution)를 나타내고 횡축은 소득의 누적분포를 나타낸다. 이 때 원점에서 45°선은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내며 이상적인 상태임을 가정한다. 지니係數는 소득의 계층별 분포가 이 45°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지니係數의 测定은 45°선에서 떨어져 있는 면적과 45°선이 이루는 삼각형 면적의 비율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니係數는 소득의 계층간 집중도를 나타내며, 0은 완전한 평등도를 나타내고 1은 완전한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지니係數는 각 所得階層의 소득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기 위해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i$ 와  $j$ 는 각 所得階層을 나타내고, 所得階層  $i$ 의 소득은  $Y_i$ 로, 所得階層  $i$ 의 加重值를  $P_i$ 로,  $N$ 은 總標本數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이 때 지니係數( $G$ )는 所得階層간의 평균차(mean difference)의 합과 평균소득( $\mu$ )과의 비율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G = \sum_i \sum_j \frac{|Y_i - Y_j|}{2N^2\mu} P_i \cdot P_j$$

### 3. Atkinson 指數

社會厚生函數(Social Welfare Function)를 응용한 대표적인 衡平性 係數가 Atkinson(1970) 指數이다. Atkinson은 社會厚生函數를 개인의 소득에 대해 합산형태로 분리가 가능한 대칭적 함수(additively separable and symmetric function)를 정의하였다. 또한 Atkinson 指數를 유도하기 위해 동등 분포소득(equally distributed income),  $Y_{EDE}$ 를 정의하였다. 동등 분포소득은 현재의 소득분포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과 같은 수준의 사회후생을 가져다 주는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동등 분포소득을 사용하여 Atkinson 指數(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 = 1 - \frac{Y_{EDE}}{\mu}$$

$$\mu = \sum_i \frac{Y_i}{N}$$

여기서  $\mu$ 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며, 위의 공식을 통해서 Atkinson 指數는 所得階層간 不平等度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소득  $Y$ 에 따른 效用函數,  $U(Y)$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U(Y) = \frac{A + BY^{1-\varepsilon}}{(1-\varepsilon)}, \quad \varepsilon \neq 1$$

$$U(Y) = \log_e(Y), \quad \varepsilon = 1$$

여기서  $A$ 와  $B$ 는 상수이며,  $\varepsilon$ 은 그 사회가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the degree of aversion to inequality)를 나타낸다. 즉  $\varepsilon$ 이 큰 값을 가질수록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tkinson 指數(I)는 效用函數 형태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 1 - \left[ \sum_i \left( \frac{Y_i}{\mu} \right)^{1-\varepsilon} \cdot \frac{P_i}{N} \right]^{\frac{1}{1-\varepsilon}}$$

여기서  $N$ 은 사회 구성원 수를 나타내고,  $P_i$ 는 所得階層  $i$ 의 加重值를 나타낸다.

#### 4. Berlant-Strauss 指數

Berlant와 Strauss(1983, 1985)는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租稅負擔의 정도를 설명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租稅負擔을 나타내는 累進的 制度,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租稅負擔을 나타내는 比例的 制度,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租稅負擔이 적은 逆進的 制度를 말한다.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계층의 같은 취급”이란 고전적 정의에 따라 같은 소득수준의 두 가구가 같은 租稅負擔率을 가지는가를 비교해 본다. B-S 指數는 모든 가구를 소득과 租稅負擔率에 따라 두 가구씩 서로 비교하여 垂直的 衡平性의 세 요소 및 水平的 衡平性의 어떠한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測定한다.

B-S 係數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i$ 를 일정 구간으로 순위에 따라  $m$ 계층( $i=1, \dots, m$ )으로 나눈다. 각 가구의 소득  $j$ 를 일정구간으로 순위에 따라  $n$ 계층으로 나누면  $j=1, \dots, n$ 으로 표시할 수 있다. B-S 係數는 두 가구를 서로 비교하므로, 비교를 위한 또 하나의 가구를 나타내기 위해 비교 대상가구의 유효세율  $h$ 를  $h=1, \dots, m$ 으로, 소득  $k$ 를  $k=1, \dots, n$ 으로 나타내면 자신과의 비교를 피하기 위해  $i \neq h, j \neq k$ 로 표시할 수 있다.  $N_{ij}$ 가  $i$ 순위의 유효세율과  $j$ 순위의 소득에 해당되는 총 가구수를 나타낼 때, 이들 가구들과의 비교대상으로  $N_{hk}$ 를 정의하면 이는  $h$  순위의 유효 세율과  $k$  순위의 소득에 해당되는 총 가구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i, j, h, k$ 는 높은 조세율과 소득을 나타낼 때 높은 숫자를 가지고  $i=j=h=k=1$ 은 가장 낮은 세율과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租稅負擔의 比例的 분포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모든 가능한 비교의 경우의 수( $\Delta$ )에서 소득수준은 다르나( $j \neq k$ ), 세율은 같은( $i=h$ ) 경우의 수의 비율( $\theta$ )로써 구할 수 있다. 이때 소득 1계층( $Y_1$ )과 2계층( $Y_2$ )의 소득격차( $Y_2 - Y_1$ )와 소득 1계층( $Y_1$ )과 10계층( $Y_{10}$ )의 소득격차( $Y_{10} - Y_1$ )를 차등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두 가구의 소득격차를 加重值로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heta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substack{k=1 \\ k \neq j}}^n [ N_{ij} \cdot N_{ik} \cdot |Y_{ij} - Y_{ik}| ]$$

租稅負擔의 累進的 분포를 따르는 비율( $\phi$ )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높은 租稅 負擔率을 가진 부분을 测定함으로써 구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h < i, k < j$ 인 경우, 혹은  $h > i, k > j$ 인 경우를 말한다. 비교대상에서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비교에서 세율의 차이만큼 加重值를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租稅負擔의 累進的 분포를 따르는 비율( $\phi$ )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높은 조세 負擔率을 가진 부분을 测定함으로써 구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h < i, k < j$ 인 경우, 혹은  $h > i, k > j$ 인 경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에서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비교에서 세율의 차이만큼 加重值를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hi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h < i}^m \sum_{k < j}^n [ N_{ij} \cdot N_{hk} \cdot \frac{i}{h} \cdot |Y_{ij} - Y_{hk}| ] +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h > i}^m \sum_{k > j}^n [ N_{ij} \cdot N_{hk} \cdot \frac{h}{i} \cdot |Y_{ij} - Y_{hk}| ]$$

租稅負擔의 逆進的 분포를 나타내는 비율( $\gamma$ )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적은 租稅 負擔率을 가진 부분을 测定함으로써 구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h < i, k > j$ 인 경우, 혹은  $h > i, k < j$ 인 경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에서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비교에서 세율의 차이만큼 加重值를 준다. 逆進的 분포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gamma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h < i}^m \sum_{k < j}^n [ N_{ij} \cdot N_{hk} \cdot \frac{i}{h} \cdot |Y_{ij} - Y_{hk}| ] +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h > i}^m \sum_{k < j}^n [ N_{ij} \cdot N_{hk} \cdot \frac{h}{i} \cdot |Y_{ij} - Y_{hk}| ]$$

총비교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Delta$ 는 위의 세 가지 식에서  $1/\Delta$ 을 제외한 부분들을 합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 \sum_{i=1}^m \sum_{j=1}^n \sum_{h=1}^m \sum_{\substack{k=1 \\ k \neq j}}^n [ N_{ij} \cdot N_{hk} \cdot \max \left\{ \frac{i}{h}, \frac{h}{i} \right\} \cdot |Y_{ij} - Y_{hk}| ]$$

水平的 衡平性은 같은 소득수준을 가진 두 가구가 같은 수준의 稅負擔率을 가지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구해진다. 이 경우 같은 소득수준에서 비교하므로 소득격차에 따른加重值는 필요가 없게 된다. 水平的 非衡平性을 나타내는 비율( $\beta$ )은 같은 소득수준의 두 가구가 서로 다른 稅負擔率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beta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substack{h=1 \\ h \neq i}}^m [ N_{ij} \cdot N_{hj} \cdot \max \left( \frac{i}{h}, \frac{h}{i} \right) ]$$

여기서  $\delta$ 는 水平的 衡平性과 水平的 非衡平性을 합산한 경우의 수로서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 \sum_{i=1}^m \sum_{j=1}^n \sum_{\substack{h=1 \\ h \neq i}}^m [ N_{ij} \cdot N_{hj} \cdot \max \left( \frac{i}{h}, \frac{h}{i} \right) ] + \sum_{i=1}^m \sum_{j=1}^n [ N_{ij} \cdot (N_{ij} - 1) ]$$

위 식의 오른쪽 편 두번째 항은 稅負擔率과 소득이 같은( $i=h, j=k$ )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N_{ij}^2$ 의 비교가 가능하나 자신과의 비교를 제외하면 경우의 수는  $N_{ij}(N_{ij}-1)$ 이다.

### III. 資 料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稅負擔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올바른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이나 특정계층에 편이(bias)된 자료의 사용은 稅負擔에 대한 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稅負擔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성격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변형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 1. 微視資料의 現況

微視資料를 사용한 稅政策의 評價模型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크므로 稅分野의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稅負擔의 衡平性과 같은 개개인의 자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微視資料의 사용이 연구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微視資料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稅負擔 衡平性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지출 및 납세한 세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 관련 연구에 필요한 微視資料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國稅廳이 보유한 勤勞者의 年末精算資料와 사업자 및 일부 근로자의 綜合所得稅 申告資料가 그것이다. 이들 자료는 소득과 실지 지불한 세액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直接稅 관련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sup>3)</sup> 대부분의 소득 관련 조사자료들은 정보의 正確性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세 연구에서 국세청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國稅廳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를 모집단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국세청 관련 자료가 조세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자료를 사용하여 所得稅의 부담 분석은 향후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둘째,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자료가 그것이다. 현재 도시가계는 統計廳에서 매년 5,000여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都市家計年報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농촌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조사는 農林水產府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農家經濟統計年報를 통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세밀하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출은 700여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間接稅 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 또한 사용상의 제약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우나 특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조세 관련 연구에 사용되었다.<sup>4)</sup> 이 자료는 각 가구를 방문해서 얻은 자료이므로 소득에 관한 정보는 정확도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自營業者를 포함한 근로자와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3) 미국의 경우 직접세의 연구에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신고자료는 비교적 표본조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소득 및 세액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직접세 관련 연구가 국세청의 신고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국세청 신고자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판매되므로 자료의 어려움은 없다.

4)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한 연구로는 郭泰元(1987), 羅城麟(1991), 羅城麟과 玄鐵權(1993), 이계식과 배준호(1986) 등을 들 수 있다.

## 2. 資料의 變形과 問題點

본 연구에서는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負擔의 衡平性 分析을 시도하는데 1987년 도시가계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조사는 매년 統計廳에 의해 행해지는데 1988년까지는 조사대상가구가 매달 약 1/12 씩 바뀌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sup>5)</sup>. 1987년 도시가계조사는 4,30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호시설 군대막사에서 거주하거나 他地方에 유학하는 학생들과 가구원 수가 1인인 도시가구는 제외하였다<sup>6)</sup>.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負擔은 각 가구의 연간소득 및 지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가계자료를 연간자료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7년 도시가계 자료의 경우 12개월을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1987년 1/4분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각 가구의 분기별 소득 및 지출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가구는 2,016가구로 1987년 원래의 표본도시가구의 반밖에 안된다. 다음에 1987년을 중심으로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분기별 季節指數를 구하고 이 指數를 각 항목에 곱하여 연간 자료를 환산하였다. 이 推定方法의 問題點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표본 도시가구는 低所得層을 실제보다 적게 대표하게 된다. 왜냐하면 低所得層 가구일수록 자주 이사할 가능성이 높아 1/4분기의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한 도시가구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므로 새롭게 추출된 도시가구의 표본은 연간자료로 환산된 장점을 가진 반면, 모집단의 所得階層에 따른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 특정 所得階層에 편기된 이 도시가구 표본자료의 단순한 사용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얻게 되므로 母集團化 방법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人口特性과 所得特性에 따라 표본을 母集團化시켰다. 人口特性的 변수는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고 所得特性的 경우는 월 평균지출액을 사

5) 1989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2달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6) 재정정책에서 가구원 수가 1인인 가구는 매우 중요하나 도시가계자료는 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재정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도시가계자료 사용은 한계점이 있다.

7) 1989년부터는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동일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용하여 모집단 약 590만 가구로 母集團化하는 加重值를 산정하였다<sup>8)</sup>. 그러므로 각 가구는 인구와 소득의 특성에 따라 加重值를 가지고 있으므로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衡平性 계산시 이러한 加重值가 고려되어야 한다.<sup>9)</sup>

### 3. 實際所得의 推定

표본조사에서 소득항목들은 대체로 過少報告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自營業者들의 소득은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自營業者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과 소비행태가 근로자 가구와 같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여 근로자외 가구의 調查所得 대신에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稅負擔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調查所得을 사용하는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을 계산할 때는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한다.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과 소비행태가 같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점은 기존 연구들이 총체적 데이터를 사용한데 비해, 본 연구는 도시가구의 微視資料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實際所得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도시가계 자료는 1989년도의 계절에 따라 조정된 월별 소득과 지출자료이며, 總資料數는 1,226가구이다. 1989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1989년부터 도시가계조사가 그 전과 달리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연간소득과 연간지출을 바탕으로 소비함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료가 1987년에 가깝기 때문에 가구들의 소비패턴이 비슷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實際所得을 추정한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가구는 가구의 특성(예를 들면 가구크기, 연령별 구성, 교육수준 등)이 각각 다르고, 이러

8) 모집단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성린과 현진권(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 모집단화시킬 때 이들 변수들에 대한 결합분포를 알고 있을 때는 가중치의 산정은 간단하다. 그러나 모집단의 결합변수를 모를 때는 각각의 독립분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미국의 국세청 자료는 충화 무작위 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으로 각 자료는 모집단화시키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중치는 세액 신고형태(filing status)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한 가구 특성은 그 가구의 지출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근로자와 가구들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음의 가정을 한다. 가구 소비(C)는 가구의 **總所得**(Y), 가구원 수(N)와 주택 소유형태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 간의 관계는 **指數函數**(exponential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指數函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 도시가구의 소비행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Yoo and Choo(1987)). 지출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주택 소유형태에 관한 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가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回歸方程式**을 사용하였다.<sup>10)</sup>

$$\begin{aligned} \ln C = & \alpha + \alpha_2 D_2 + \alpha_3 D_3 + \beta \ln N + \beta_2 (D_2 \ln N) \\ & + \beta_3 (D_3 \ln N) + \gamma \ln Y + \gamma_2 (D_2 \ln Y) + \gamma_3 (D_3 \ln Y) \end{aligned}$$

여기서  $D_2$ ,  $D_3$ 는 각각 **傳貲**과 **月貲**을 위한 **假變數**이고 그 이외는 **自家**를 의미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비에 있어서 **限界消費性向**이 1보다 적은 값을 가지고, 가구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소유형태의 차이는 규모의 경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주택 소유형태는 소비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보인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비형태를 분석할 때는, 가구원 수와 주택 소유형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근로자 가구의 **消費函數**를 1987년 근로자와 가구의 지출자료에 응용하여 **實際所得**을 추정하였다. **實際所得**의 추정치가 **實際所得**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없지만, **自營業者**를 비롯한 근로자와 가구의 **調查所得**은 **實際所得**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調查所得**과 **支出構造**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가구의 **實際所得** **推定值**의 사용이 **調查所得**의 사용보다 **稅負擔** 분석에 더욱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 IV. 分析 結果

여기에서는 **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계층별 부담과, 세 가지 종류의 **衡平性**

10) 상세한 내용은 Yoo and Na (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係數를 사용한 衡平性 效果를 測定한다. 먼저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도시가구 표본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두 계층 간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부담 차이를 살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所得稅와 附加價值稅에 대한 자료는 소득자료를 기초로 하여 1987년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法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所得稅와 附加價值稅額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 조사자료는 租稅額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稅目別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정확도에 있어 신빙도가 낮으므로 조사한 세액을 사용하지 않았다.<sup>11)</sup>

### 1. 家口區分別 稅負擔의 差異

조사대상 표본 도시가구를 크게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稅負擔의 차이점을 살펴 본다. 이 두 집단으로의 구분은 도시가계 연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는 공무원 및 공무원외 사무 종사자를 포함한 봉급자와 기능공 및 상용 노무자와 자유노무자를 포함한 노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외 가구는 自營業者, 個人 經營者, 法人 經營者, 自由業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층별 稅負擔의 분석은 각 계층의 평균 負擔率을 사용하고, 이는 각 계층의 전체 세액을 전체 소득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가구 구분별 所得階層別 표본가구의 분포를 살피기 위해 표본가구를 所得階層과 가구 구분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때 근로자 가구는 調査所得을 사용하였고, 근로자외 가구는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하였다. <표 4-1>은 가구 구분별 所得階層의 標本分布를 보여준다. 먼저 전체 가구에서 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자 가구가 전체의 68%, 근로자외 가구가 전체의 32%를 차

11) 조사한 소득세액이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을 통한 소득세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대해서 조사가구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박재완(1992)은 1989년 도시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분석하는데 조사한 소득세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는 연구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 소득세 부담보다 박재완의 결과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하고 있다. 1987년 統計廳에서 발표한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의하면 彼雇傭者와 自營業者의 비율이 각각 35.2%, 64.8%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가구의 가구 구분별 구성과 매우 근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sup>12)</sup>. 전체 표본가구를 소득의 순위별로 10집단으로 나누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저소득 계층을 나타내는 1분위 2분위 3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외 가구는 1%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 가구가 저소득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고所得階層인 10분위의 경우 거의 모든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表 4-1〉 자료의 분포상황

所 得 階 層 (하 위)	가 구 구 分	
	근 로 자	근 로 자 외
1 분 위	9.99	-
2 분 위	9.23	0.78
3 분 위	9.22	0.78
4 분 위	8.52	1.45
5 분 위	8.03	1.98
6 분 위	7.46	2.51
7 분 위	7.11	2.89
8 분 위	5.26	4.79
9 분 위	2.77	7.15
10 분 위	0.76	9.34
합 계	68.34	31.66

〈표 4-2〉는 도시가구의 所得과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부담을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로 나눈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도시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843만원이며, 所得稅 負擔額은 24만 7천원, 附加價值稅 負擔額은 3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각 稅制의 평균 負擔率을 살펴보면 所得稅가 2.94%이며, 附加價值稅가 3.73%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비교할 때,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483만 8천원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1,619만원으

12)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본 자료는 인구 및 소득특성에 의해 모집단화하는 가중치를 구한 결과이므로 가구구분에 의한 분포 또한 모집단에 근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 소득의 3.3배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은 3.35%인데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은 2.67%로 근로자 가구보다 오히려 더 낮다. 附加價值稅의 稅負擔率을 비교하면 근로자 가구가 5.93%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2.31%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值稅 負擔率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2〉 家口區分別 稅負擔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평균	負擔率	평균	負擔率	평균	負擔率
所 得	8432959		4838555		16191574	
所 得 稅	247594	2.94	161998	3.35	432354	2.67
附加價值稅	314236	3.73	286895	5.93	373251	2.31

〈표 4-2〉의 결과는 도시가구 중에서 所得稅를 전혀 내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平均 稅負擔率이므로, 所得稅를 납부하는 가구들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 비교는 어렵다. 所得稅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所得稅를 납부하는 가구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 所得稅 負擔率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근로자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575만원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1,783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외 가구가 여전히 3배 이상 높다. 平均 所得稅 負擔率은 근로자 가구가 3.75%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2.98%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免稅者를 제외한 家口區分別 稅負擔의 比較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평균	負擔率	평균	負擔率	평균	負擔率
所 得	9785689		5751770		17835764	
所 得 稅	321339	3.28	215684	3.75	532185	2.98

〈표 4-4〉는 전체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부담을 所得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전체 所得稅額 중에서 각 계층이 부담하는 所得稅額의 비율을 살펴본다.

최고 소득층인 10분위 계층이 전체所得稅額의 48%, 9분위 계층이 19%를, 8분위 계층이 13%로, 이들 고소득층 30%가 전체所得稅額의 80%를 납부하고 있다. 각所得階層이 부담하는所得稅의負擔率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所得稅制度가累進稅로 이루어져 있으므로累進的稅負擔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최하所得階層인 1분위의所得稅負擔率은 0.02%이고, 소득이 높을수록所得稅負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所得階層인 10분위 계층의所得稅負擔率은 3.57%로써, 소득이 낮은 8분위와 9분위의所得稅負擔率인 3.58%, 3.69%에 비해서, 오히려所得稅負擔率이 낮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는實際所得에 따른稅負擔이累進的으로 잘 반영됨에 반해, 근로자 외 가구는實際所得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소득을 근거로累進課稅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附加價值稅의所得階層別 부담은逆進的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所得階層別附加價值稅負擔率을〈표 4-4〉를 통해 살펴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이 9.39%로써 가장 높고, 상위 10분위 계층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所得階層간에는所得階層의 순위와附加價值稅負擔率의 순위가 거의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 우리나라附加價值稅의逆進的稅負擔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4〉 모든家口의所得階層別稅負擔

所得階層 (하위)	所 得 稅		附加價值稅	
	分布(%)	負擔率(%)	分布(%)	負擔率(%)
1 분 위	0.01	0.02	4.42	9.39
2 분 위	0.22	0.22	5.89	6.91
3 분 위	0.94	0.66	5.91	5.48
4 분 위	1.69	1.01	7.02	5.56
5 분 위	3.22	1.66	7.55	5.02
6 분 위	5.35	2.28	8.92	4.91
7 분 위	8.40	2.95	10.72	4.89
8 분 위	13.18	3.58	12.71	4.43
9 분 위	19.09	3.69	13.61	3.34
10 분 위	47.90	3.57	23.26	2.17
平均負擔率		2.94		3.73

〈표 4-5〉 勤勞者 家口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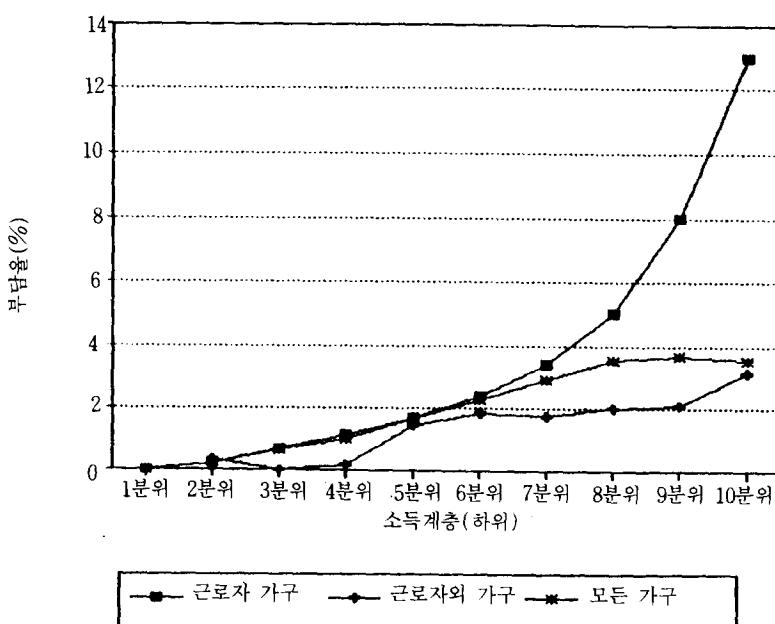
所得階層 (하위)	所 得 稅		附加價值稅	
	分布(%)	負擔率(%)	分布(%)	負擔率(%)
1 분 위	0.02	0.02	7.08	9.39
2 분 위	0.46	0.21	9.01	7.22
3 분 위	2.01	0.71	9.09	5.70
4 분 위	3.54	1.16	10.43	6.03
5 분 위	5.90	1.71	10.78	5.54
6 분 위	9.37	2.42	12.27	5.62
7 분 위	15.09	3.42	14.51	5.83
8 분 위	21.35	5.01	14.22	5.91
9 분 위	25.04	8.00	9.42	5.33
10 분 위	17.22	12.98	3.19	4.26
平均負擔率		3.35		5.93

〈표 4-5〉와 〈표 4-6〉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負擔을 所得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所得稅 負擔의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차이를 살펴본다. 전체 所得稅額 중에서 각 所得階層이 부담하는 정도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균등한 정도를 나타낸다. 즉 근로자 가구의 경우, 고소득 계층 30% (8, 9, 10분위)가 전체 所得稅額의 63%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고소득 계층 30%가 전체 所得稅額의 95%를 부담한다. 특히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가 부담하는 所得稅額은 근로자 가구가 17%, 근로자외 가구가 75%로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은 특정 所得階層에 편중되어 있다.

〈표 4-6〉 勞動者外 家口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所得階層 (하위)	所 得 稅		附加價值稅	
	分布(%)	負擔率(%)	分布(%)	負擔率(%)
1 분 위	0.00	-	0.00	-
2 분 위	0.01	0.37	0.71	3.62
3 분 위	0.00	0.00	0.64	2.83
4 분 위	0.05	0.18	1.36	2.78
5 분 위	0.86	1.46	2.19	2.85
6 분 위	1.81	1.84	3.37	2.77
7 분 위	2.51	1.79	4.42	2.61
8 분 위	5.99	2.00	10.20	2.80
9 분 위	13.86	2.09	20.55	2.60
10 분 위	74.92	3.14	56.56	2.08
平均負擔率		2.67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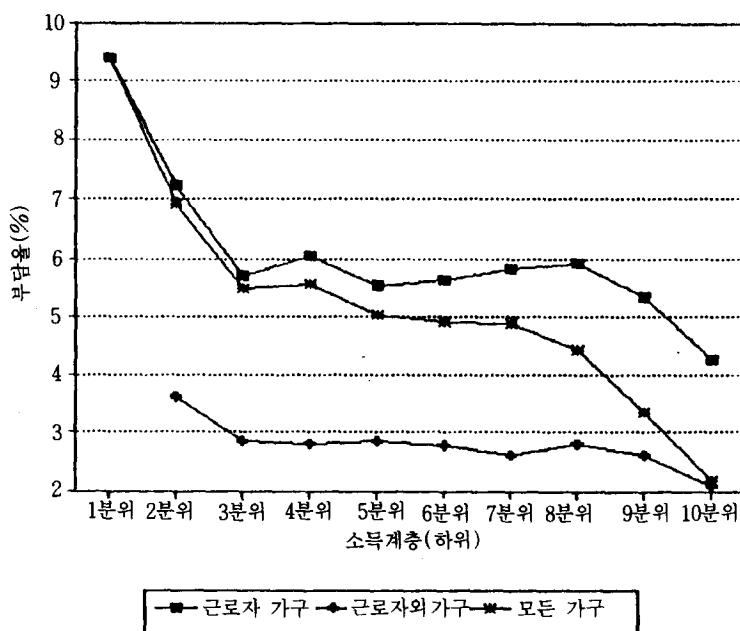
〈그림 4-1〉은 이들 두 가구들의 所得稅 부담의 所得階層別 차이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부담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율이 증가한다. 반면 근로자와 가구의 所得稅 부담은 累進的 형태를 보여주나, 累進度에 있어서는 근로자 가구보다는 덜하다. 우리나라 所得稅 制度가 소득의 증가에 따라 所得稅의 負擔이 累進的으로 과세되나,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와 가구의 所得稅 부담이 서로 다른 누진구조를 가진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 여부에 따라 다른 所得稅 부담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가구는 비교적 과세대상인 소득이 정확히 세무당국에 의해 파악이 되나, 근로자와 가구의 소득은 파악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가구의 實際所得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근로자와 가구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사용하였고, 그들이 납부한 所得稅는 보고한 소득에 근거를 한 결과,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累進的 부담을 보여준다. 근로자와 가구의 과세대상인 實際所得의 파악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와 가구의 所得稅 부담은 심한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림 4-1〉 소득세 부담의 비교

所得稅 부담의 격차는 더욱 심하다. 근로자 가구의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租稅負擔率은 12.98%인데 반해, 근로자외 가구 10분위 계층의 租稅負擔率은 3.14%로써, 근로자 가구가 4배 이상 높다.

附加價值稅 부담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차이점을 <표 4-5> 와 <표 4-6>을 통해 비교해 보자. 전체 附加價值稅額에서 각 계층이 부담하는 附加價值稅額의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비교적 所得階層別로 부담하는 附加價值稅額이 전체 附加價值稅額의 10% 내외에서 심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각 계층별로 부담하는 附加價值稅額은 많은 격차를 보여준다.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가 56.56%를 차지하고, 다음 계층인 9분위가 20.55%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 20%가 전체 附加價值稅額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다. 附加價值稅의 逆進的 성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계층별 부담이 심한 차이를 가지는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階層別 인구의 분포가 고소득 계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所得階層別로 인구가 균등히 분포되어 있어 附加價值稅의 부담도 근로자외 가구보다 균등하다.



<그림 4-2> 부가가치세 부담의 비교

〈그림 4-2〉는 所得階層別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附加價值稅 負擔率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值稅 부담 세율이 근로자외 가구의 부담 세율보다 훨씬 높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附加價值稅 負擔率이 하위계층인 1분위가 9.39%로 가장 높고,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일수록 附加價值稅率이 감소하여 逆進的 구조를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저소득 2분위 계층이 3.62%로 가장 높은 세율을 보여 주고,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세율이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근로자 가구처럼 뚜렷한 격차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로자외 가구의 附加價值稅 負擔은 比例的 分布에 가깝다.

## 2.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衡平性 效果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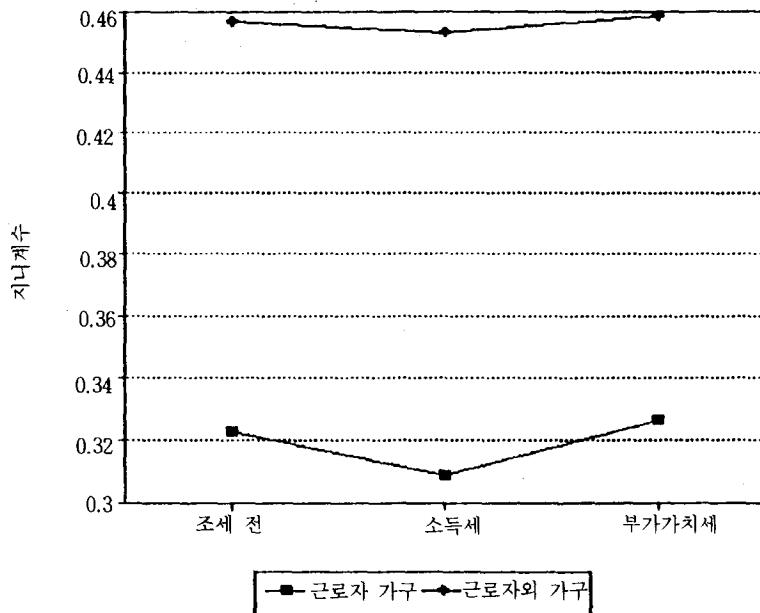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衡平性 效果를 세 가지 衡平性 係數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표 4-7〉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지니係數를 통해 살피면,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가 부과되기 전에는 소득의 集中度를 나타내는 지니係數의 값은 0.4874이고, 所得稅 후에는 0.4819로 감소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所得稅制가 소득분포의 衡平性을 1.13% 증가시켰다. 附加價值稅가 부과된 후에 지니係數의 값은 0.4957로서 소득분포의 衡平性을 1.7% 감소시켰다. Atkinson指數를 사용한 결과를 보면, 그 사회가 所得階層간의 불평등성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가진다. 즉 所得階層 간의 불평등성을 비교적 덜 싫어하는 사회에서는 ( $\epsilon=0.5$ ) 조세 전의 소득의 不平等度 係數가 0.1996으로 나타났다. 所得稅가 부과된 후에는 불평등도가 1.9% 향상된 0.1958로 나타났고, 附加價值稅 후에는 불평등도가 3.56% 감소된 0.2067을 보여준다. 반면 所得階層간의 불평등도를 비교적 싫어하는 사회에서는 ( $\epsilon=2.5$ ), 조세 전의 불평등 係數가 0.5856이다. 같은 소득분포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계층간의 불균형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Atkinson 指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所得稅 후에는 불평등도가 1.45% 향상된 0.5771이고, 附加價值稅 후에는 불균형도가 0.2% 감소한 0.5868이다. 두 가지 係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所得分配 효과의 결과를 살피면 이를 두 係數間에 변화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7〉 모든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租稅 前	所得稅 後		附加價值稅 後	
	係 數	係 數	變化率(%)	係 數	變化率(%)
Gini 係數	0.4874	0.4819	1.13	0.4957	-1.70
Atkinson 指數 $\epsilon=0.5$	0.1996	0.1958	1.90	0.2067	-3.56
$\epsilon=2.5$	0.5856	0.5771	1.45	0.5868	-0.20
B-S 指數 累進度		0.8153		0.0684	
比例度		0.0411		0.0493	
逆進度		0.1436		0.8823	
水平的 非衡平度		0.7549		0.8837	

앞에서 〈표 4-4〉는 所得階層간에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부담의 정도를 비교한 바 있다. B-S 指數는 이 표의 결과를 하나의 指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制의 特징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所得稅制는 累進的이며 累進係數가 0.8153이다. 이 係數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 가구들간의 所得稅 부담을 비교할 때, 비교 총 경우의 수 중에서 81.53%가 소득이 높은 가구가 높은 所得稅率을 가지는 累進的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附加價值稅制는 逆進的이며 逆進係數는 0.8823이다. 이 값은 전체 가구간의 附加價值稅 부담을 서로 비교할 때, 비교한 총 경우의 수 중에서 88.23%가 소득이 높은 가구가 附加價值稅率이 오히려 낮은 逆進的인 관계를 보여줌을 의미한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같은 수준의 稅負擔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水平的 非衡平係數를 살펴보면, 所得稅制의 경우는 0.7549이고 附加價值稅의 경우는 0.8837이다. 이는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전체 가구 중에서 75.49%는 다른 수준의 所得稅率을 부담하고, 소득수준이 같은 전체 가구 중에서 88.37%는 다른 수준의 附加價值稅率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水平的 衡平性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所得稅制가 동일 소득수준에 있는 계층에게 서로 다른 所得稅 부담을 가져다 주는 제도의 활용 때문이다. 또한 附加價值稅의 높은 水平的 非衡平性은 같은 所得階層의 지출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附加價值稅制는 이러한 다양한 지출형태에 서로 다른 附加價值稅額을 부담시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稅制의 衡平性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이 垂直的 衡平性만을 고려하고,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所得稅制 및 附加價值稅의 낮은 水平的 衡平性을 고려할 때 衡平性의 한 부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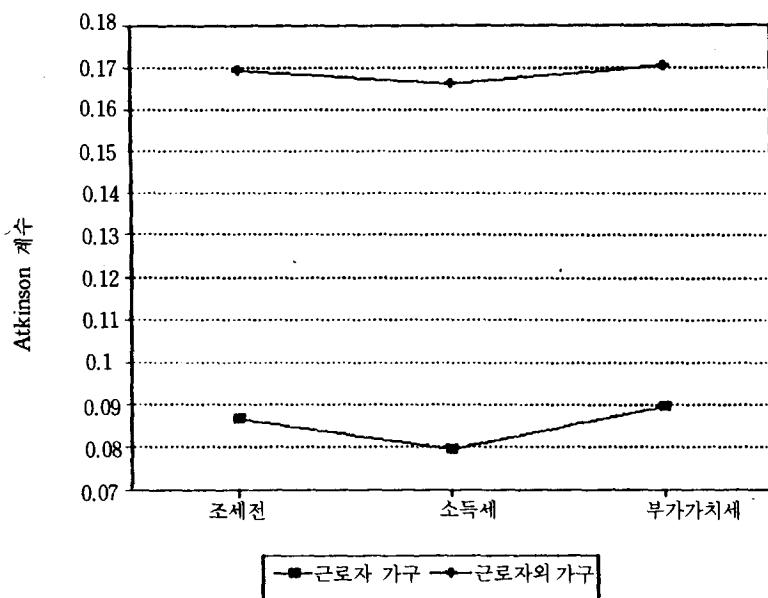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려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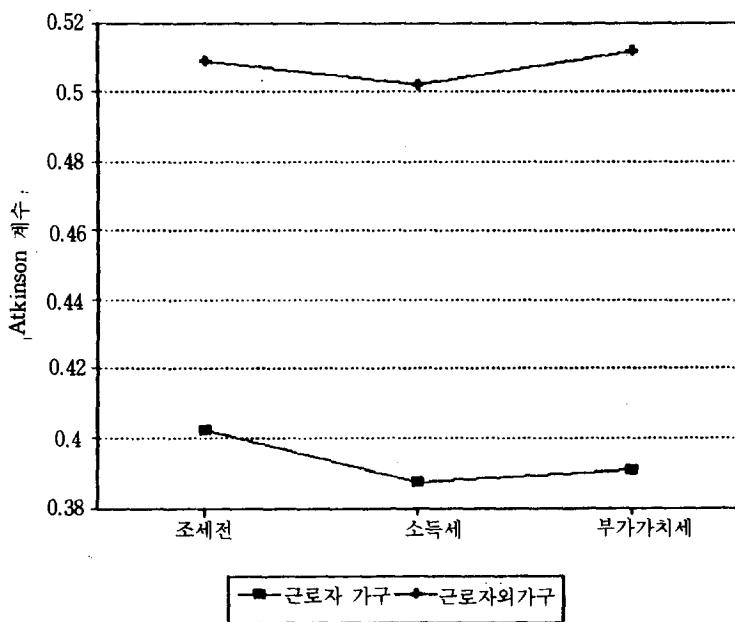
〈그림 4-3〉 가구별 지니계수의 비교

〈표 4-8〉과 〈표 4-9〉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衡平性 效果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는 지니係數와 Atkinson指數를 사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所得分配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조세 전 및 조세 후 모두에서 所得分配가 더 균등하다. 근로자 가구 계층은 비교적 소득의 분포가 균등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소득분포가 중소득층 이상에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차이점은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후에도 조세 전 所得分配의 차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所得稅의 所得分配 향상 효과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 가구는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높다. 이는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소득과세에 비교적 정확히 반영됨에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이 소득과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가구는 所得稅의 累進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소득의 분포가 균등하게 향상됨을 의미



〈그림 4-4〉 Atkinson 지수(1)의 비교



〈그림 4-5〉 Atkinson 지수(2)의 비교

한다. 附加價值稅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향상 효과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 가구는 附加價值稅 後 所得分配의 衡平性이 근로자와 가구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심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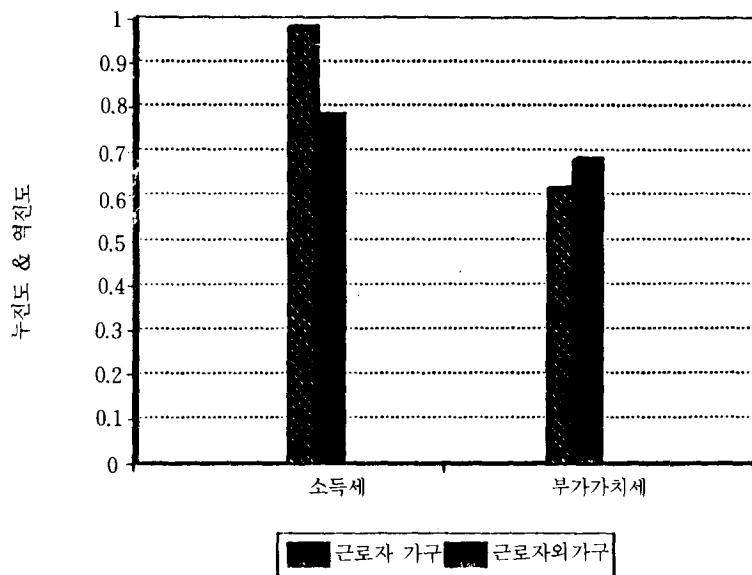
〈표 4-8〉 勤勞者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租稅 前	所得稅 後		附加價值稅 後	
	係 數	係 數	變化率(%)	係 數	變化率(%)
Gini 係數	0.3227	0.3087	4.34	0.3268	-1.27
Atkinson 指數 $\epsilon=0.5$	0.0865	0.0794	8.21	0.0898	-3.82
$\epsilon=2.5$	0.4024	0.3873	3.75	0.3909	2.86
B-S 指數 累進度		0.9795		0.3103	
比例度		0.0123		0.0727	
逆進度		0.0081		0.617	
水平的 非平衡度		0.5721		0.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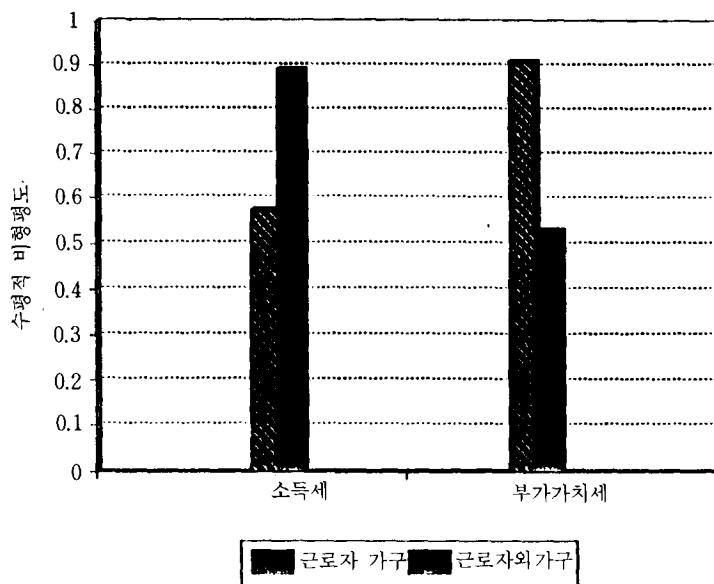
〈표 4-9〉 勤勞者外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租稅 前	所得稅 後		附加價值稅 後	
	係 數	係 數	變化率(%)	係 數	變化率(%)
Gini 係數	0.4567	0.4528	0.85	0.4585	-0.39
Atkinson 指數 $\epsilon=0.5$	0.1692	0.1662	1.77	0.1705	-0.77
$\epsilon=2.5$	0.5087	0.5019	1.34	0.5114	-0.53
B-S 指數 累進度		0.7581		0.0642	
比例度		0.0497		0.2541	
逆進度		0.1922		0.6816	
水平的 非平衡度		0.8980		0.529	

家口別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制의 特징을 B-S 係數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그림 4-6〉은 〈표 4-8〉과 〈표 4-9〉의 결과를 요약하여, 所得稅의 累進度와 附加價值稅의 逆進度를 가구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累進度는 0.9795로 매우 높고, 근로자와 가구의 所得稅 累進度는 0.7581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課稅所得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累進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비해, 근로자와 가구의 課稅所得은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므로 所得稅는 보고한 소득에 기초를 하기 때문이다. 附加價值稅의 逆進構造를 가구별로 비교하면, 근로자 가구는 0.617이고, 근로자와 가구는 0.6816으로, 근로자와 가구의 逆進度가 약간 높다. 가구별 水



〈그림 4-6〉 가구별 특징 비교



〈그림 4-7〉 수평적 비형평도 비교

平的 非衡平度를 비교하기 위해 〈표 4-8〉과 〈표 4-9〉를 사용하여 요약하면 〈그림 4-7〉과 같다.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度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0.5721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898이다. 근로자외 가구의 水平的 非衡平度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는 그들이 보고한 소득에 균거를 하나, 實際所得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고하는 소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부과한 所得稅額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비교적 정확하므로 공제제도와 같은 특별계층에 대한 所得稅의 감소효과로 인해 水平的 非衡平性이 나타나나, 그 정도는 근로자외 가구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附加價值稅의 水平的 非衡平度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0.909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529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水平的 非衡平度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所得階層에 있는 근로자 가구의 지출구조가 매우 다름을 의미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하였다 해도 그들이 부담하는 附加價值稅의 수준은 다름을 의미한다. 현행 附加價值稅制는 특정 물품에 대해 免稅를 하고 있고, 이들 물품의 선정이 근로자 가구의 지출구조에 맞게 같은 所得階層이 같은 附加價值稅 負擔을 가지도록 작용하지 못함이 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의 垂直的 및 水平的 衡平性 효과를 지니係數, Atkinson指數, Berliant-Strauss指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이며, 전체 도시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自營業者를 나타내는 근로자외 가구로 나누어, 이를 두 계층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부담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실증적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전체 도시가구의 所得稅와 附加價值稅 平均 負擔率은 각각 2.94%, 3.73%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平均 負擔率은 각각 3.35%, 2.67%로서,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附加價值稅 平均 負擔率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각각 5.93%, 2.

31%로서, 근로자 가구가 2배 이상의 높은 附加價值稅 負擔率을 보여준다.

(2) 우리나라 所得稅는 累進制度이므로 所得階層別로 累進的 稅負擔을 보여준다. 최저 所得階層인 1분위의 所得稅 平均 負擔率은 0.02%이고, 소득이 높아지는 계층일수록 所得稅 平均 負擔率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平均 負擔率은 3.57%로서 8분위 계층의 3.58나 9분위 계층의 3.69%보다 낮은 負擔率을 보여준다. 附加價值稅의 稅負擔은 逆進的으로 나타나 하위 1분위 계층이 9.39%로서 가장 높고, 상위 10분위 계층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은 累進的 分布를 보여주고,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부담 또한 累進的 분포를 보여주나, 累進度에 있어서 근로자 가구보다 매우 낮다. 이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가 납부한 所得稅를 申告所得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해,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경우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所得稅 負擔率을 보여준다.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值稅 부담은 逆進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근로자외 가구의 부담은 比例的 分布에 가깝다.

(4) 지니係數와 Atkinson 指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所得分配 效果를 살펴보면, 이들 두 係數의 변화가 서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所得稅制은 所得分配의 衡平性을 2%이내로 향상시켰고, 附加價值稅는 所得分配의 衡平性을 4%이내로 감소시켰다.

(5) B-S 指數를 사용한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累進度는 0.8153이고, 附加價值稅制의 逆進度는 0.8823으로 나타났다. 또한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度는 0.7549이고, 附加價值稅制의 水平的 비형평도는 0.8837로서, 所得稅制와 附加價值稅制의 水平的 衡平性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 所得稅制의 所得分配 향상효과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소득과세에 정확히 반영됨에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은 소득과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附加價值稅制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7) B-S 指數를 사용한 所得稅制의 累進度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0.9795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 0.7581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所得稅 산정에 정확히 반영되므로 근로자 가구의 累進度가 높게 나타났다. 附

加價值稅制의 逆進度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0.617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6816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만을 보여준다.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性을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가 0.5721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0.898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水平的 衡平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稅負擔衡平性 면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附加價值稅의 水平的 非衡平度는 근로자 가구가 0.909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0.529로 나타났다.

### 1. 政策 示唆性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정책 시사성을 살펴보면 첫째, 稅制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소득 재분배 향상이며, 이 효과를 测定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垂直的 衡平性에만 치중하였고, 水平的 衡平性에는 관심이 덜하였다. 稅制의 衡平性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水平的 衡平性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히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부담의 衡平性 문제는 水平的 衡平性으로 일반의 관심이 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외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공평한 所得稅 부담을 위해서는 근로자외 가구의 정확한 實際所得의 추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최고 所得階層에 있는 근로자외 가구 중에서 전혀 所得稅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實際所得의 추정이 稅負擔의 衡平性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겠다. 이들 계층의 實際所得을 직접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즉 소비를 통한 소득의 추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다.

셋째, 附加價值稅의 逆進度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逆進度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는 免稅品目의 조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附加價值稅의 면세 품목의 설정은 所得階層의 支出構造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所得分配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所得階層간의 지출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附加價值稅 면세품목을 과학적으로 선정한다면, 附加價值稅의 逆進度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2. 制約點 및 向後 研究方向

본 연구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稅負擔의 衡平性을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자료는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조사 자료로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정확성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의 지출에 대한 정보는 매우 풍부하여 間接稅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간간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附加價值稅의 稅負擔 분석은 가구의 지출자료가 필요한 만큼, 도시가계자료가 이상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所得稅 분석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조사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사자료는 신빙도가 낮으므로 미국에서는 國稅廳 申告資料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所得稅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 준 所得稅 부담의 실증적 결과는 우리나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와 綜合所得稅 申告資料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되어 도시가계자료의 소득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는 아직까지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의 차이점은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한 기준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實際所得을 근거로 한 연구결과이다. 實際所得의 추정은 본 연구의 결과에 매우 중요하므로, 實際所得 추정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지출을 통한 소득추정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지출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의 선정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로 하며, 본 연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13) 부가가치세의 역진도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제에 대해 논의하지만, 곽태원(1987)에 따르면 특별소비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간접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가구들의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설정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의 선정을 통하여 간접세의 역진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郭泰元,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 再分配 效果”, 『한국개발연구』, 제 9권 제 3호, 1987.
2. 羅城麟, 『韓國의 租稅 社會扶助 模型 I』,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1-41, 1991.
3. 羅城麟·玄鎮權,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2：母集團化 적용을 통한 租稅－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 『재정논집』, 제7집, 1993.
4. 朴宰完, 『最適稅務調查制度：理論模型과 納稅函數의 推定을 통한 檢證』, 한국정책학회 발표논문, 1992.
5. 李啓植·裴峻皓,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 分布 分析”, 郭泰元 李啓植(편),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한국개발연구원, 1986.
6. 玄鎮權, “美國 所得稅制度의 衡平性 測定에 관한 研究”, 『재정논집』, 제 5 집, 1991.
7. Atkinson, A.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70.
8. Atkinson, A.B.,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dividual Life-Cycle”, *Oxford Economic Papers*, 1971.
9. Atkinson, A.B., “Horizontal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In Aaron, H. and M.J.Boskin (Eds.), *The Economics of Taxatio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83.
10. Atkinson, A.B., J.Gomulka, & H.Sutherland, “Grossing-Up FES Data for Tax-Benefit Models”, in Atkinson A.B.& H.Sutherland (eds), *Tax-Benefit Models*, 1988.
11. Berlant, M.C. and R.P.Strauss,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Taxes”, In Zeckhauser, R. and D.Leebaert (Eds.), *What Role for Government?*, Durham, ND : Duke University 1983.
12. Berlant, M.C. and R.P. Straus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in David &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13. Borooah, V.,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 a Survey",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38, No 4, 1991.
14. Feldstein, M., "On the Theory of Tax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1976.
15. Fields, G.S. and C.H. Fei, "On Inequality Comparisons", *Econometrica* 46, March, 1978.
15. Kiefer, D.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1984.
16. King, M.A., "An Index of Inequality : With Applications to Horizont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conometrica* 51, January, 1983.
17. Lambert, P.J.,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Basil Blackwell, 1989.
18. Musgrave, R.A., "Horizontal Equity, Once More", *National Tax Journal*, June, 1990.
19. Musgrave, R.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 McGraw-Hill, 1959.
20.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
21. Paglin, M., "The Measurement and Trend of Inequality : A Basic Rev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
22. Plotnick, R.,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23. Plotnick, R.,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Horizontal Inequ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2.
24. Plotnick, R., "A Comparison of Measures of Horizontal Inequity", *In David and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1985.
25. Rosen, H.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come, Utility, and Horizontal Equ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8.
26. Suits, D.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The American*

- Economic Review*, 1977.
27. Wertz, K.L., "A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Taxation of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8.
28. Yoo, J.G.& S.Na, "An Estimation of the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Korean Urban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Summer, 1991.